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269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D 외 272인)[1]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167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7., 2016. 7. 5.[2], 2017. 7. 6.[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2 '지

1) 제1심 원고들 중 A(제1심 원고들 목록 순번 246)의 항소만이 취하되었는바, 제1심판결과의 비교 편의상 별지 1 원고들 명단상의 순번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항소장에 기재된 '2016. 7. 4.'은 '2016. 7. 5.'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역자원 시설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항소 취하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1 '원고들 목록' 및 '4. 결론' 부분은 제외하되, 별지 2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246.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3 '관계법령'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3~7행의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목 부분을 삭제한다.

○ 2쪽 아래에서 2행의 "3."을 "2."로 고친다.

○ 2쪽 마지막 행의 "가.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

3)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항소장에 기재된 '2017. 7. 5.'은 '2017. 7. 6.'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4] 중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5](이하 '이 사건 세율조항'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과세대상조항'과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하지도 않는 건축물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3배나 중과세하는 것은 재산세를 상회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고,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는바(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을 구축하고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소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

---

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5)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의 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재원 조달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소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지방세법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라 기준을 정립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별로 상이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층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소형건축물보다 소방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387 결정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소방시설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적인 사회인프라인 동시에 그 적정 수준의 확보는 사회안전망의 충실도를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은 물론 건축물, 농지, 임야 등 재산이 훼손됨에 따라 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2차적으로 화재 주변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생활의 불편 및 환경오염 발생 등의 부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대형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소방사무의 범위가 단순히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차원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의 현대화, 화재예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교육의 강화, 화재 진압체계의 합리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이 소방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방시설로부터 이익을 얻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과세대상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지 여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과세로서, 보유하는 건축물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과세대상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 실제로 해당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행정의 주요 수요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건축물로부터 얻는 수익의 다과나 소유·사용 주체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지 않는 성격의 조세이다. 해당 건축물이 멸실 혹은 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분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시설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화재 요인은 전기뿐 아니라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주의는 담뱃불, 불티, 불장난에 의한 화재를 말한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전되고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재위험이 예상되지 않거나 소방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수익 되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대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3배 중과세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재산세를 상회하여 과도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자체가 건축물의 용도와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규모와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 유지·관리하도록 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화재위험이나 화재 시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방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사전에 계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중과세하는 현재의 방식 이외에 같은 정도로 목적달성을 하면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생각하기 어렵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2배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만 있었으나,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화재위험 건축물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구분하여, ①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액의 100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00을 세액으로 하고, ②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세분화는 건축물의 층수가 일정부분 이상으로 높아지면 고가사다리차, 소방헬기 등 고가의 소방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고층 건축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재위험이나 화재 시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같다고 볼 수 없음에도 4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하여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건물의 높이(층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현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가치가 높은 대상물이 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재산가치가 높은 대상물에 더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재위험 건축물보다 더 큰 화재위험 및 소방비용이 예상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최저세율 1만분의 4, 최고세율 1만분의 12로서 재산세나 취득세 등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편인 점, 기존에 2배 중과세 하던 화재위험 건축물 중에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분리하여 차등 과세하기 위하여 3배 중과세율을 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3배 중과세 하는 것만으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비록 재산세와 같이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과세 취지와 목적, 과세표준, 세율, 과세요건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그 세액이 재산세의 세액 범위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17헌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387 결정 참조).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단순히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차원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위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 결정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별지 1

원고들 명단

1. D
2. E
3. F
4. G
5. H
6. I
7. 망 J의 소송수계인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F
29. AG
30. AH
31. AI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32. AJ
33. AK
34. AL(개명 전 이름: AM)
35. AN
36. AO
37. AP
38. AQ
39. AR
40. AS
41. AT
42. AU
43. AV
44. AW(개명 전 이름: AX)
45. AY
46. AZ
47. BA
48. BB
49. BC
50. BD
51. BE
52. BF
53. BG
54. BH
55. BI
56. BJ
57. 망 BK의 소송수계인 BL
58. BM
59. BN
60. BO
61. BP
62. BQ
63. BR
64. BS
65. BT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66. BU
67. BV
68. BW
69. BX
70. BY
71. BZ
72. CA
73. CB
74. CC
75. CD
76. CE
77. CF
78. CG
79. CH
80. CI
81. CJ
82. CK
83. CL
84. CM
85. CN
86. CO
87. CP
88. CQ
89. CR
90. CS
91. CT
92. CU
93. CV
94. CW
95. CX
96. CY
97. CZ
98. DA
99. DB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00. DC
101. DD
102. DE
103. DF
104. DG
105. DH
106. DI
107. DJ
108. DK
109. DL
110. DM
111. DN
112. DO(개명 전 이름: DP)
113. DQ
114. DR
115. DS
116. DT
117. DU
118. DV
119. DW
120. DX
121. DY
122. DZ
123. EA
124. EB
125. EC
126. ED
127. EE
128. EF
129. EG
130. EH
131. EI
132. EJ
133. EK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34. EL
135. EM
136. EN
137. EO
138. EP
139. EQ
140. ER
141. ES
142. ET
143. EU
144. EV
145. EW
146. EX
147. EY
148. EZ
149. FA
150. FB
151. FC
152. FD
153. FE
154. FF
155. FG
156. FH(개명 전 이름: FI)
157. FJ
158. FK
159. FL
160. FM
161. FN
162. FO
163. FP
164. FQ
165. FR
166. FS
167. 주식회사 FT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68. FU
169. FV
170. FW
171. FX
172. FY
173. FZ
174. GA
175. GB
176. GC
177. GD
178. GE
179. GF
180. GG
181. GH
182. GI
183. GJ
184. GK
185. GL
186. GM
187. GN
188. GO
189. GP
190. GQ
191. GR
192. GS
193. GT
194. GU
195. GV
196. GW
197. GX
198. GY
199. GZ
200. HA
201. HB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02. HC
203. HD
204. HE
205. HF
206. HG
207. HH
208. HI
209. HJ
210. HK
211. HL
212. HM
213. HN
214. HO
215. HP
216. HQ
217. HR
218. HS
219. HT
220. HU
221. HV
222. HW
223. HX
224. HY
225. HZ
226. IA
227. IB
228. IC
229. ID
230. IE
231. IF
232. IG
233. IH
234. II
235. IJ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36. IK
237. IL
238. IM
239. IN
240. IO
241. IP
242. IQ
243. IR
244. IS
245. IT
247. IU
248. IV
249. IW
250. IX
251. IY
252. IZ
253. JA
254. 망 JB의 소송수계인 JA
255. JC
256. JD
257. JE
258. JF
259. JG
260. JH
261. JI
262. JJ
263. JK
264. JL
265. JM
266. JN
267. JO
268. JP
269. JQ
270. JR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71. JS
272. JT
273. JU
274. JV

끝.